

●제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제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사항 알림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위반사항)
김*원	42-2003-20-0000055	901무룡호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1105번길 17-3, (고성리)	무선국 운용정지 1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김*우	42-2008-80-0000036	995진성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736번지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월(2025.8.11. ~ 2025.9.10.)

5.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무선국 운용정지 처분기간 중에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